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지침

개정 2020. 02. 05.

개정 2023. 02. 09.

개정 2024. 04. 26.

개정 2025. 05.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천안시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입주기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2(천안역 지하도상가 내 41개실)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센터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라 함은 진흥원이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천안역 지하도상가(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2) 내 지하상가 41개실을 지칭한다.
2. “입주기업”이라 함은 진흥원과 계약을 맺고 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자(기업)를 말한다.
3. “지원사업”이라 함은 진흥원이 지원센터 및 천안역 원도심 일대에 입주한 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4. “입주기간”이라 함은 진흥원이 주관한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센터에 입주계약한 개시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시설”이라 함은 지원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원센터의 모든 시설을 통칭한다.
6. “퇴거”라 함은 입주기간의 만료 및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진흥원과 입주자가 체결한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것과 중대한 계약의 위반, 사업전망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지원센터 운영 및 심사위원회

제4조(운영 및 관리범위) 진흥원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한다.

1. 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의 모집 및 선발
2. 지원센터 입주 관련 계약 및 창업활동 지원
3. 입주기업의 연장평가
4. 입주기업의 상업 활동 및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5. 도시공사 시설운영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① 진흥원은 입주기업의 계약 만료, 희망 퇴거, 강제 퇴거 등에 따른 공실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입주기업을 모집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5년 미만) 또는 예비창업자는 별도 심사를 통해 입주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개정 2024.04.26.>

② 지원센터 입주기업 선정은 진흥원 사업 부서장 등 내부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평가표에 따라 입주기업의 사업의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입주공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입주기업에게 입주기간 동안 개별 창업 공간의 보증금 및 임차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④ 입주기업이 아닌 기관 및 단체의 경우, 진흥원과 별도의 협약을 통해 입주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은 입주예정기업의 입주계약 체결 지연 및 포기, 기 입주기업의 퇴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순위를 부여하여 그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기업의 자격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개정 2024.04.29.>

제6조(입주계약 체결) ① 신규 선발된 입주기업은 지원센터 입주를 위하여 선발 통보 후 15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신규 선발된 입주기업은 입주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주소로 등록 및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단위 및 의무 입주 기간은 1년으로 하여야 한다. 단, 입주기업이 센터의 이용자 관리

정책을 위반하거나 부도·폐업 등으로 입주계약의 파기가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입주계약을 보류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개정 2024.04.26.>

④ 진흥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지원센터와 입주기업 간 체결한 입주계약서 상의 입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기간 및 연장) ①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며, 심의평가를 통해 각 1년에 한하여 최대 5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제 5호 서식에 의한 입주 연장신청서를 입주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간 연장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입주계약 만료 30일 이내에 연장 심사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연장심사 진행 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승인기준은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한다.

⑤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진흥원장의 최종 승인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제8조(입주공간 퇴거) ① 입주기업이 자진하여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기업은 퇴거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거 시 입주자는 관리비 납부 및 입주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 청소를 완료한 후 퇴거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입주기업이 입주기간 동안 훼손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입주기업 창업지원 사업) ① 입주기업 창업지원 사업은 진흥원이 모집하는 입주기업 프로젝트에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만 19세 이상 성인
 2. 거주지 소재 제한 없음(가급적 출·퇴근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 거리일 것)
 3. 지원센터 내 창업활동을 희망하는 5년 미만의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개정 2024.04.26.>

② 입주기업 프로젝트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프로젝트 신청일 시점에 지원센터 및 지하도상가 내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공간 관련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 창업대표자가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신용불량 등)
4.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 ③ 입주기업 프로젝트 지원비는 협약기간 내 집행하며 잔액은 정산보고 후 반납한다.
- ④ 입주기업 프로젝트 진행 중 업체 사정에 따라 예산변경이 필요할 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은 프로젝트 종료 30일 전까지 가능하다.
- ⑤ 지원센터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진흥원이 진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및 교육·컨설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입주기업 책무) 입주기업은 입주시설에 대한 도난, 화재 등에 유의하고, 창업공간 개·폐점 관리 및 입주공간 지원대상자로서 책무를 이행해야 하며, 책무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

1. 지원센터 창업공간 영업을 위한 개·폐점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입주기업은 행사참석, 외부출강, 교육 및 기타 일정, 공휴일 및 지하도상가 정기휴일을 제외한 공실 일을 월 7일 이상 넘기지 않는다. 월 7일 이상 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채용, 운영 대리인 지정 등을 통한 인력을 확보하여 창업공간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공실관리 계획을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입주기업은 창업공간 근태 및 운영에 대한 관리사항을 일일 단위로 기록하여야 하며, 향후 연장평가 심의 시 근태 일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4. 입주기업은 진흥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 및 컨설팅, 정기 간담회 등의 행사를 우선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 입주기업은 창업공간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 내 해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6. 대표자, 상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 발생 15일 이내에 별표 9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파악 등을 사유로 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입주기업은 지정하는 시점의 수시, 월간, 분기, 연간 등 사업실적 보고서(기타 입주기업 현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비) 지원센터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매월 관리비를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천안도시공사 지정 납부처에 지정된 기일에 수납하여야 한다. 일정기간 체납된 경우(3개월 이상)에는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변경 2024.04.29.>

제12조(입주공간의 자산) 입주기업은 지원센터에 구축한 공용장비 및 기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 장비는 사용 후 제자리에 반납하며, 분실 및 손상을 입힐 경우 A/S 경비 및 구매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13조(입주공간의 변경) ① 입주기업은 지원센터에 입주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의 확장·축소 및 업종변환 등을 사유로 진흥원이 보유한 관리분 내에서 입주공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주공간 변경 승인을 받은 입주기업은 기존 입주공간의 원상복구 및 신규 입주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본인부담금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진흥원과 새롭게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입주공간의 원상복구) 입주기간이 만료된 입주기업은 입주공간의 시설 파손 및 특수한 인테리어 처리를 했을 시 이를 원상복구 한 뒤 퇴소하여야 한다. 원상복구와 관련된 시공을 실시하기 전 이에 대한 내용을 진흥원에 보고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취소) 지원센터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한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3. 기타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입주계약 해지 및 퇴거) 지원센터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제10조의 책무를 지키지 않거나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에 취해진다.

1. 천재지변, 입주기업의 영업정지·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보고서 미제출 및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동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공간의 공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6. 입주기업 연장평가 등에 불응한 경우
7. 통합지침 및 동 사업 관리기준에 제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 진흥원의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9. 도시공사 및 진흥원으로부터 경고조치가 3회 누적된 경우 <변경 2024.04.29.>

10. 입주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7조(마케팅 지원 사업) ①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의 기 입주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04.29.>

②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케팅 관련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있는 자
2. 창업대표자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신용불량 등)
3.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③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비의 사용은 충남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지원사업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④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비는 협약 기간 내 집행하며 잔액은 정산보고 후 반납한다.

⑤ 입주기업 마케팅 진행 중 업체 사정에 따라 예산변경이 필요할 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은 프로젝트 종료 20일 전까지 가능하다.

⑥ 지원센터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진흥원이 진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및 교육·컨설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부칙 <2024.04.29.>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입주기업 지원신청서 및 프로젝트 수행계획서(예산계획서)

<별지 2호> 입주기업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별지 3호> 입주기업 프로젝트 예산계획 변경 신청서

<별지 4호>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계약서

<별지 5호>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공간 입주연장 신청서

<별지 6호>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공간 퇴거 신청서

<별지 7호>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공간 변경 신청서

<별지 8호>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공간 공실 관리 계획서

<별지 9호>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변경 신고서

<별지 1호> 입주기업 지원신청서 및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제5조 관련)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프로젝트 지원신청서

팀 명 (기업명)	※사업자등록보유자의 경우 등록명 기재		사업자보유	창업예정지(희망) 및 신청사유	
			☐ 유 ☐ 무	천안역지하도상가 ○○호실	
대 표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상세주소작성			연락처
직 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지원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년도	기관명		지원금액
❖ 주요 아이템					
※ 주요아이템 관련 보유 능력, 판매 및 유통 경험					
❖ 지원 희망 사유					
※ 본 사업의 지원 희망 사유를 아이템과 연결하여 작성					
위의 사실대로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사업 『입주기업 프로젝트』에 참가를 지원합니다. 202○년 월 일 팀 명(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재)충남콘텐츠진흥원장 귀하					

20○○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입주기업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팀 명 [기 업 명]	※사업자등록 시 명칭을 예상하여 작성
-------------------	----------------------

※ 5페이지 이내 작성(파란글씨 삭제 후 제출)

20○○. . .

대표자 (인)

※ 반드시 서명 또는 인감 포함하여 제출

입주기업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1. 지원자(기업)기본사항

팀 명 (기업명)	※사업자등록보유자의 경우 등록명 기재		사업자보유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업종·업태
			☐ 유 ☐ 무		등록예정 내용 포함
대 표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상세주소작성		연락처 / E-mail	
직 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거주지

2. 주요 판매(창업)아이템

- 판매(창업) 아이템 관련 판매, 유통, 제작 경험 작성
- 아이템 제작 방식, 특이사항(자격보유/특허 등) 작성

3. 창업목적

- 원도심 내 창업 지원 활동 목적 및 동기 작성
- 원도심 내 관련 아이템 판매 가능성

4. 사업장 운영 계획

- 창업장소 선정사유
- 월별, 연간 운영계획(고용계획 및 상주 판매 계획) 매출
- 창업 예정장소 사진 첨부

입주기업 프로젝트 예산계획서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비율
지원금		
자부담		
합 계		

(단위: 원)

구 분		예산활용 계획		
목	세목	지원금	자부담	산출근거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용역 개발비			
	홍보비			
	재료비			
	기타 제잡비			
합 계				

입주기업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1. 창업개요

창 업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간이과세/일반/법인)	000-000 (간이)	
업 체 명		사 업 자 등 록 일	00-00-00	
사 업 장 주 소				
아 이 템 명				
지 원 기 간	2000. 0. ~ 2000. 0.			
사 업 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	창업지원비	자부담금
	사업비	0		

2. 추진실적 및 결과

주요추진 실 적	○ 아이템개발 : 건 ○ 온·오프라인 홍보 : 건 ○ 입점 : 건 ○ 판매 : 건 ○			
	[매출현황]		[고용현황]	
	매출액	원	고용	명
	누 계	원	누 계	명
	향후예상	원	향후예상	명

3. 세부추진내용

1) 아이템/상품개발	- 시제품 제작/판매 아이템 구매
-------------	--------------------

○ 월별추진내용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아이템선정	○			
아이템구매/개발		○		
아이템 고도화			○	

※추진일정별로 작성해주세요.

○ 개발내용 또는 상품구매

- 구매목적
- 상세내용(단가및 수량)
- 사진 첨부(첨부시에는 첨부파일로 함께 제출해주세요.)

(2) 홍보마케팅	- 온/오프라인 활동 내역
-----------	----------------

○ 온라인

1. 입점내용
2. 키워드 검색
3. 홈페이지/SNS 제작 활동
4. 프로모션(할인)

○ 오프라인

1. 전시참가
 - ▶ 전시명 :
 - ▶ 전시기간/장소:
 - ▶ 전시내용 :

2. 마켓참가

- ▶ 전시명 :
- ▶ 전시기간/장소:
- ▶ 전시내용 :

(3) 점포창업/입점

- 인테리어/점포운영

작성예)

○ 점포창업 추진

1. 개업일 - 2016. 11. 30.

2. 장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사업자등록증 별도로 제출해주세요.(창업공간 지원자 주소지 변경)

3. 추진내용 - 전기설비/간판부착/디스플레이

(4) 판매 - 온·오프라인 판매

- 판매실적

20〇〇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입주기업 프로젝트 수행 지원금 정산보고서

〈 과 제 개 요 〉

- ◎ 과 제 명 :
- ◎ 주관기관 :
- ◎ 수행기간 :
- ◎ 사 업 비 : 천원 (지원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반납금액 : 원

2000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사업
입주기업 프로젝트 관련
사업비(지원금 + 현금 자부담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일자 : 20〇〇년 〇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인)
연 락 처	휴 대 폰	
	이 메 일	

☐ 사업비정산 책임자

과 제 명			
작성책임자		연락처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지원금	자부담		

☐ 사업비 집행 결과

(단위 : 원)

지출번호	지출세목	지원금	자부담	집행금액	집행잔액	진흥원 검토결과	
						불인정액	검토의견
1						-	진흥원 기재
2						-	진흥원 기재
3						-	진흥원 기재
4						-	진흥원 기재
5						-	진흥원 기재
6						-	진흥원 기재
7						-	진흥원 기재
8						-	진흥원 기재
합 계		0	0	0	0	-	진흥원 기재
발생이자액					0,000	-	진흥원 기재
총 반납금액					진흥원 기재	진흥원 기재	진흥원 기재

모든 입력 금액은 공급가액만 해당함 (부가세는 제외)

사업비 관리통장 내역

☐ 사업비 통장 내역

□ 사업비 비목(세목)별 지출부

○ 용역비

(단위 : 원)

지출번호	지출일자	집행내역	지 급 처	지출금액
1 - 01				
1 - 02				
1 - 03				
총 합 계				

○ 용역비 증빙자료

지출번호	1 - 01	지출세목		지출방법	계좌이체
지출일자		지 출 처		지출금액	

○ 기자재 및 시설비

(단위 : 원)

지출번호	지출일자	집행내역	지 급 처	지출금액
2 - 01				
2 - 02				
2 - 03				
총 합 계				

○ 기자재 및 시설비 증빙자료

지출번호	2 - 01	지출세목		지출방법	계좌이체
지출일자		지 출 처		지출금액	

○ 홍보비

(단위 : 원)

지출번호	지출일자	집행내역	지 급 처	지출금액
3 - 01				
3 - 02				
총 합 계				

○ 홍보비 증빙자료

지출번호	3 - 01	지출세목		지출방법	계좌이체
지출일자		지 출 처		지출금액	

<별지 3호> 입주기업 프로젝트 예산변경신청서 (제9조관련)

발신자

수신자 (재)충남콘텐츠진흥원장

(참조) 벤처창업본부장

제 목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예산 계획 변경 승인 요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팀명(대표 : ○○○)는 귀 원에서 지원하는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행 중에 있습니다.
3. 상기 본인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획서 작성 시 수립하였던 ~~~~~ 사유로 예산 계획을 수정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변경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 업 명 :

나. 지원예산 :

다. 대 표 자 :

라. 변경사항 : 개발비, 운영비, 홍보비 지원예산 세부항목 일부 변경
(항목 변경표 및 수정예산안 참조)

붙임 1. 항목 변경표 1부.

붙임 2. 수정예산안 1부.

붙임 3. 견적서 1부. 끝.

(업체명/대표자명)

시행 업체명-00 (2009. 00. 00) 접수

우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

전화 010-0000-0000 전송 (팩스) / (이메일) / 공개

[붙임 1] 예산 항목 변경표

비 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비고
				△	
합 계				0	

[붙임 2] 수정예산안

[붙임 3] 견적서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공간 입주계약서

제1조(목적) 충남콘텐츠진흥원(이하 "A"라 한다)과 입주자 ○○○(이하 "B"라 한다) 간에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 사용과 활용 및 기타 입주지원 관련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기본원칙) (A)는 (B)가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B)는 동 사업이 성공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제3조(입주공간) (B)는 천안시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내 ○○○호를 창업 공간으로 활용한다.

제4조(계약기간 및 입주조건) ① (B)의 입주기간은 사업기간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A)는 (B)의 입주기간 동안 개별 창업(준비) 공간의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해당 공간의 월 관리비는 (B)가 부담한다.

제5조(장비사용) (B)는 천안시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공용공간 내 공용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책임·손해배상·보험) ① (B) 및 그 참여인력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적·물리적 손해에 대해서 (A)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B) 및 그 참여인력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입주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손해는 (B)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B)는 입주시설에 대한 도난, 화재 등에 유의하고, 입주공간 청소 및 청결에 노력하며, 「천안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지침」 및 관련 규칙을 준수한다.

제8조(계약해지 및 퇴거) (B)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 ①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② 기타 본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주관기관(천안시)에서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를 공익의 목적으로 변경·사용하게 될 경우

제9조(기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A)와 (B)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0. 00. 00.

(A) : 충남콘텐츠진흥원

(B) :

원 장 : (인)

대표자 : (인)

고유번호 : 312-82-11217

사업자등록번호 :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공간 입주연장 신청서

기업명		신청자	
연락처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업태	
입주공간	호	입주기간	. . . ~ . . . ○년 ○개월
입주만료일자		입주연장 희망기간	
입주연장 신청사유	◇ ◇ ◇		
입주기간 만료 후 이전계획	◇ ◇ ◇		

상기와 같이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공간 입주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충남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공간 퇴거 신청서

기업명		신청자	
연락처	- -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종	
설 립 일		사원수 (종업원)	
입주공간	※입주호수(평수 기준) 호	입주기간	. . ~ . .
퇴거완료일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 .	지원사업	※입주시 지원받은 사업명 기재
퇴거사유			

※ 지원된 창업공간 퇴거 시에는 재입주가 불가하며, 퇴거사유에 대한 계약 조항 검토 및 심의 후 조치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인지하였으며, 퇴거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목적 :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을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한 : 3년
3.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회사, 휴대폰), 이메일,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4.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DB 정보파일 및 문서 파기
5. 정보주체의 권리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회원 카드 발급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비즈니스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〇〇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충남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공간 변경 신청서

기업명		신청자	
연락처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업태	
현 입주공간	호	입주기간	. . . ~ . . . ○년 ○개월
희망 창업공간	호	이전희망일자	. .
창업공간 변경 신청사유	◇ ◇ ◇		
공간이전 계획 및 활동계획	◇ ◇ ◇		

상기와 같이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공간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충남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공간 공실 관리 계획서

기업명		신청자	
연락처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업태	
입주공간	호	입주기간	. . . ~ . . . ○년 ○개월
공실기간	. . . ~ . . . (○일)	공실 신청 횟수	호
창업공간 공실사유	◇ ◇ ◇		
공실 운영 계획	◇ ◇ ◇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공간 공실에 대해
상기와 같이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충남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9호>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변경 신고서 (제10조 관련)

변경 신고서

기 업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홈페이지			
입주호실				
변경내용	1. 대표자 2. 상 호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 업체 정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재)충남콘텐츠진흥원장 귀하